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 의 사 협 회

KOREAN MEDICAL ASSOCIATION

직인생략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http://www.kma.org]/전화(02) 794-2474/전송(02) 793-9190
의사국 의사국장 오윤수 [100] 의무팀장 최윤배 [110] 담당 김은숙 [112]/E-mail: medischool@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750-744호

시행일자 2009. 5. 29.

수 신 시도 의사회장

참 조

제 목 진단서 발급 철저 및 유의사항 통보

1. 회원 권익향상을 위하여 매진하시는 귀 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일부 지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및 그 부양의무자들이 건강상태 및 근로능력확인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수급권자 및 수급자로서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무리하게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특히, 현행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 제7조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예외대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자체에서 1종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송부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을 통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며, 근로활동이 불가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3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의 문제와 ‘근로활동 불가’라는 문구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모호성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동 수급권자 등에게 발급한 진단서가 오히려 일선 회원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진단서 발급 원칙 및 유의사항을 통보하오니 귀 회 산하 회원들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진단서는 의사가 신체에 관한 의견이나 의학적 판단을 문서로 작성하여 증명하는 의학적 서류로서 의료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교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종 진단서(건강, 사망, 상해, 출산, 사산증명서 등) 작성은 의료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본회가 마련한 진단서 작성지침에 따라 교부하는 것이 원칙임.

나.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및 그 부양의무자들이 건강상태 및 근로능력확인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진단서 발급 요청 시 ‘3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한 진단서 기재 시 의사의 순수한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고, ‘근로활동 불가’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다. 의료법 제17조 및 본회가 마련한 진단서 작성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진단서 등 증명서를 교부할 경우 의료법 제89조에 의한 처벌(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형법상 책임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의료법 및 진단서 작성 지침에 의거하여 진단서 등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